

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(안)

의안 번호	251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2025. 11. 11.
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청사의 노후 및 향후 공간협소 해소를 위한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 조성액 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5년도 말 조성액	2026년도 조성계획			2026년도 말 조성액
	수입	지출	증감	
14,257,969	842,470	5,400,000	△4,557,530	9,700,439

나. 2026년 자금운용계획

- 수입계획: 15,100,439천원
 - 이자수입(322,470), 매각수입(520,000), 예치금 회수(14,257,969)
- 지출계획: 15,100,439천원
 - 비용자성사업비(5,400,000) ※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건축비용으로 지출
 - 예치금(9,700,439) ※ 정기예금으로 예치

3. 근거 법령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, 제13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5조, 제7조

다. 「울산광역시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6조, 제7조

4. 붙임 : 202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(안)

참고자료 **관련 법령**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**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조례로 정한다.

□ **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**

제5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1.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·관·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2.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·부문·정책사업·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0.>

1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2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10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12. 10.>

□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1.3.14><개정 2011.12.26><개정 2014.12.29>

제2조(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)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개정 2011.3.14><개정 2011.12.26>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1. 일반회계 전출금
2. 국, 공유재산 매각대금
3. 지방채 발행
4. 울산광역시 보조금
5.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
6. 그 밖의 수익금<개정 2014.12.29>

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<개정 2022.10.4.>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신청사 부지 매입비
2. 신청사 건축비
3.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<개정 2014.12.29>
4.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<신설 2011.12.26.>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개정 2014.12.29>

② 기금은 구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.

제5조(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)<개정 2022.10.4.>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4.>

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

제6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

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.<개정 2016.12.30><개정 2022.10.4.>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개정 2022.10.4.>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<개정 2016.12.30><개정 2022.10.4.>
2.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<개정 2016.12.30>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개정 2016.12.30>
4. <개정 2014.12.29><삭제 2016.12.30>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제9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하고,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10.4.>

제10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.

1. 기금운용관: 청사관리 담당국장<개정 2022.10.4.>
2. 기금출납원: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<개정 2022.10.4.>

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.<개정 2014.12.29><개정 2022.10.4.>

제11조(관계 규정의 준용)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12.29.><개정 2022.10.4.>